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5

제안연월일: 2024. 9. 5.

제 안 자:이개호·이기헌·김현정

박희승 • 이정문 • 김영배

박수현 · 정진욱 · 이언주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

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1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
				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